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수련 활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특성과 이를 둘러싼 환경을 잘 이해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이 필요함
-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의 기획·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과 경험 등으로 청소년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나. 추진근거

-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3)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6)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7)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위탁사무

- 1) (기획) 조직구성, 프로그램 개발, 시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2) (운영) 인력 운영, 시설물 관리,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등
- 3) (행정) 예산 수립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결과 보고, 관계 기관 협력

라. 시설개요

- 1) 시 설 명 :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 2) 소 재 지 : 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70(선산읍)
- 3) 개 관 일 : 2011. 9. 24.
- 4) 수용정원 : 382명 ※ 생활관 기준
- 5) 규 모 : 부지 16,074m², 연면적 12,956m²
- 6) 세부현황

구 분	층	면적(m ²)	주요시설
본 관	지하1층 ~ 지상4층	4,445.81	강당, 사무실, 강의실, 프로그램실
체육관	지하1층 ~ 지상2층	1,823.25	체육관, 야외공연장, 식당
생활관	지하2층 ~ 지상4층	6,687.36	수영장(25m 5레인), 객실(67실)

- 7) 종사자 현황 : 현원24명, 정원26명

마. 위탁기간 : 2023. 11 ~ 2027. 12월

※ 최초위탁 : 2017. 11월

바. 위탁조건 : 청소년단체에 위탁

-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학(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설치)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1)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 평가내용 :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

3) 평가방법 :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아. 소요예산 : 2,228백만원(시비) ※ 2023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프로그램)
2,228	1,187	848	193

자. 성과평가결과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결과 활용

차.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3. 부서의견

- 선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에게 수련활동, 문화지원,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참여 청소년의 만족도가 높으며
- 디지털 친화도가 높고 활동 수요는 다양해지는 청소년의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이 타당함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2023년 제1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관리·운영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운영 기준은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준용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세외수입은 수강료, 시설(수영장·대관)사용료, 숙박료, 문화체험료이며 2023년 현재 기준 반영 및 상승률 1%로 반영함

나. 향후 5년간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 12,067백만원으로 연평균 2,413백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2차 연도부터 운영비 매년 인상률 4%로 반영함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271	273	279	282	284	1,389
세출	2,228	2,317	2,410	2,506	2,606	12,06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2,228	2,317	2,410	2,506	2,606	12,067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2,228	2,317	2,410	2,506	2,606	12,067

5. 부대의견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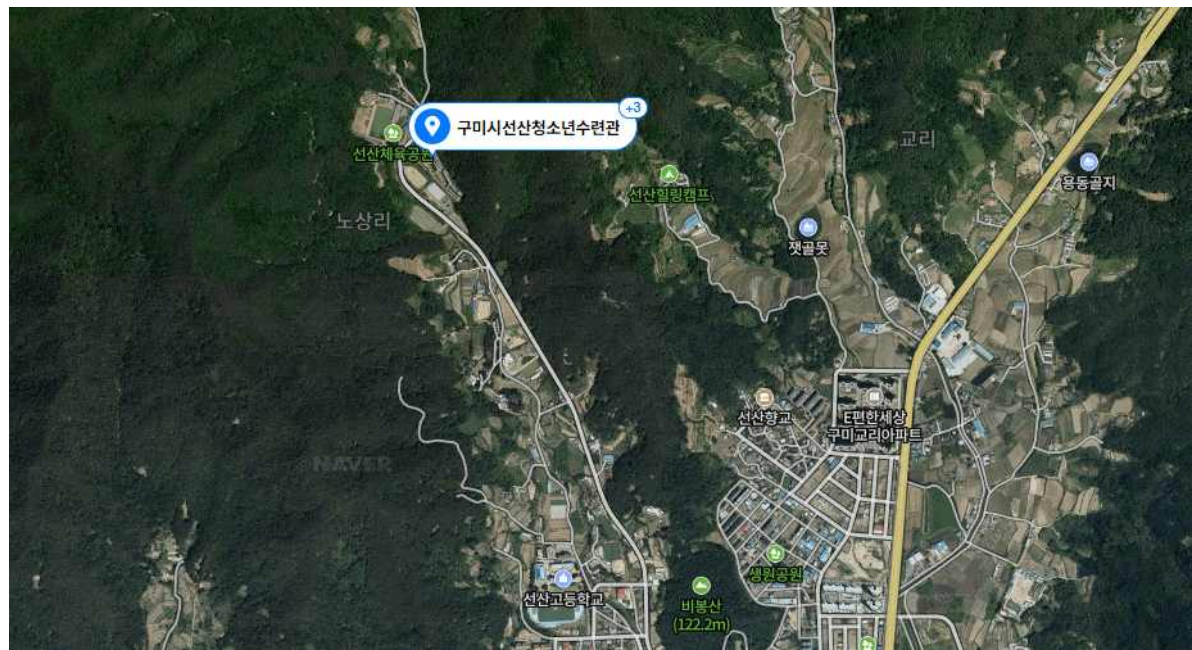
6.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김애신(054-480-272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3년 기준)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2,227,959	
인 건 비	1,040,796	기본급, 명절휴가비,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24명
복리후생비	146,040	4대보험, 급량비, 숙직비
일반수용비	70,375	무인경비시스템용역, 전기 및 승강기 점검 수수료, 생활관 시설 유지보수, 수영장 청소 및 수질관리 등
사무관리비	68,736	부서운영비, 수련관 광고비, 도서인쇄, 직원 위탁 교육비,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공공운영비	326,403	전기요금, 수도요금,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요금
세 탁 비	13,000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용 역 비	370,574	시설 경비 및 청소용역
여 비	30,080	직원 출장 여비
재 료 비	20,269	수영장 약품비, 수영장 소모성 물품, 구급약품
프로그래 운 영 비	69,560	수련활동, 방학프로그램, 문화강좌 등에 필요한 재료비
행사실비 보 상 금	33,786	스포츠대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연수 등
기타보상금	38,340	프로그램 강사수당, 스포츠대회·공모전 심사수당 등

사진대지

□ 위치도



□ 현장사진



재 산 현 황

구 분			건 물		토 지		비 고
			동 수	연면적 (m ²)	필 지	면적 (m ²)	
합 계			3	12,956.42	1	16,074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 용 재 산	3	12,956.42	1	16,074	
		공 공 용 재 산	-	-	-	-	
		기 업 용 재 산	-	-	-	-	
		보 존 용 재 산	-	-	-	-	
	일 반 재 산	행 정 재 산 외 공 유 재 산	-	-	-	-	

시 설 세 부 현 황

구 분(층)		연면적(m ²)	시 설 내 용
합 계		12,956.42	
본 관	지하1	654.19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물품보관실
	지상1	967.78	통신실, 방송실, 휴게실, 상담실, 양호실, 강당, 공용공간
	지상2	875.46	대강의실, 소강의실, 세미나실, 사무실, 문화강좌실
	지상3	986.34	창작공방실, 로봇창의교실, 영상편집실, 로봇체험관
	지상4	962.04	댄스실, 골프체험실, 악기보관실, 음악연습실, 노래연습실
체 육 관	지상1	890.21	식당(250석)
	지상2	933.04	체육관(500명), 야외공연장
생 활 관 (특화시설)	지하2	1,363.21	수영장, 샤워장, 탈의실, 의무실, 기계실
	지하1	1,054.02	물품보관실, 휴게실, 사무실, 주차장
	지상1	1,143.88	객실 16개
	지상2	1,034.55	객실 17개
	지상3	1,045.85	객실 17개
	지상4	1,045.85	객실 17개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제8호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 고시, 2005. 4. 8.>

아래 각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소 관 부 서		교육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김 종 미
	팀 장	박 정 희
	담 당 자	김 애 신 (480-2723)